

2026년도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I 개 요

- 일 시 : 2026. 4. 28.(화) 10:00~12:00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7명, 불참 3명
 - 참석위원(17명)
 - 이인재(위원장), 최병조(부위원장), 이준한, 허 진, 안치영, 김태성, 성영애, 김준동, 김우일, 황문현, 김평원, 김응철, 이승호, 강희찬, 이영수, 김규원, 황병희
 - 불참위원(3명)
 - 김장균, 김영균, 이원우

II 회의 결과

- 제1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과거 교육공무원 신분 당시 적용되던 조교 신규채용 제출 서류를 현행 인사 제도에 부합하도록 정비 및 간소화하여 채용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구분	임용 후보자 제출서류 목록	사유	비고
1	삭제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현재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님	
2		신원진술서	공무원 대상 제출서류(신원조회)	
3		기본증명서	전임교원, 법인직원 미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전임교원 미제출	
5	수정 (붉은 글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현재 자기소개서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화	
6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을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7		주민등록 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 등본: 전임교원 미제출	
8	추가	그 밖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추가 요청 서류	

※ 규정 내 반영사항(「인천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임용) (①, ②항 생략)

③ 조교를 신규채용 및 재임용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커.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1부~~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러. 신원진술서 3부~~

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라. 주민등록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그 밖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3. 참고사항

○ 추진일정

- 본부회의 보고 : 2026. 3. 30.(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4. 7.(화)
- 총장방침 : 2026. 4. 7.(화)
- 의견조회(조교노조 포함) : 2026. 4. 7.(화) ~ 13.(월)
- 사전심사 : 2026. 4. 14.(화) ~ 4. 15.(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4. 28.(화)
- 평의원회 심의 : 2026. 5월 예정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2호 심의안건: 2026학년도 학사운영 계획 변경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노동절(5.1) 공휴일 지정에 따라, 우리 대학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절(5.1)을 정기휴업일로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인사혁신처(2026.4.9.)
- 「인천대학교 학칙」 제26조(정기휴업)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6.4.20.(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4.21.(화)
- 총장 방침 : 2026.4.21.(화)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4.28.(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3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AI-Biz 연구소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처장]

1. 제안사유

- 가. AI 기술의 비즈니스 가치화: 기술이 시장 ROI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실무적 문제 해결
- 나. 경영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의 융합 연구를 통한 인천 송도 지역의 다양한 산업을 위한 DX·AX 실증 거점 구축
- 다. BM 특허 기반 수익모델 연구 및 AX 리더 인재 양성: 이론 성과를 넘어 산업 현장 사업화 역량 확보
- 라. 공학·이학·사회·인문 AI 관련 연구 분야의 복합적인 문제나 학제간 연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기반 융합 연구 표준 정립

2. 주요내용

- 가. 연구소의 사업 범위(안 제3조)
- 나. 연구소의 조직(안 제4조 ~ 제9조)
- 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8조)
- 라. 연구소의 재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연구구성위원회 설치 사전 승인 (2026. 4.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일정

- 연구구성위원회 심의 : 2026. 4. 1.(수)
- 본부회의 보고 : 2026. 4. 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4. 7.(화)
- 총장 방침 : 2026. 4. 13.(월)
- 의견조회 : 2026. 4. 13.(월) ~ 4. 20.(월)
- 사전심사 : 2026. 4. 22.(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4. 28.(화)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제4호 심의안건: 연구원 규정 제정 및 명칭 정비에 따른 하위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인천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8건)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처장]

1. 제안사유

- 가.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의 제정에 따라 각 연구소의 상이한 직급 체계를 표준화하여 통일된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 개정에 동의한 9개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원 구분 및 자격 요건을 규정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다.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연구소 명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소 소속 연구원 직급 명칭 통일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 반영)
- 예시) (변경 후)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 연수 연구원, 방문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구분,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 나. 연구소별 운영규정 제명 띄어쓰기 일괄 정비
- 예시) (변경 전) 운영 규정 → (변경 후) 운영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

- 연구소장 대상 업무설명회 2회 개최(2025. 9월)
- 일괄개정 동의 설문조사 실시

라. 기 타

- 연구구성위원회 심의 : 2025. 6. 10.(화)
- 본부회의 보고 : 2026. 3. 1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3. 17.(화)
- 총장 방침 : 2026. 3. 26.(목)
- 의견 수렴 : 2026. 3. 30.(월)~ 4. 06.(월)
- 사전 심사 : 2026. 4. 10.(금)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4. 28.(화)
- 평위원회 심의 : 2026. 5월 예정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5호 심의안건: 연구원 규정 제정 및 명칭 정비에 따른 하위 지침 일괄개정지침안
(인천대학교 BMI연구소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외 56건)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처장]

1. 제안사유

- 가.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의 제정에 따라 각 연구소의 상이한 직급 체계를 표준화하여 통일된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 개정에 동의한 57개 기타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원 구분 및 자격 요건을 규정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다.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연구소 명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소 소속 연구원 직급 명칭 통일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 반영)
- 예시) (변경 후)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 연수연구원, 방문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구분,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나. 연구소별 운영지침 제명 띄어쓰기 일괄 정비

- 예시) (변경 전) 운영 지침 → (변경 후) 운영지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연구소장 대상 업무설명회 2회 개최(2025. 9월)

○ 일괄개정 동의 설문조사 실시

라. 기 타

○ 연구구성위원회 심의 : 2025. 6. 10.(화)

○ 본부회의 보고 : 2026. 3. 1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3. 17.(화)

○ 총장 방침 : 2026. 3. 26.(목)

○ 의견 수렴 : 2026. 3. 30.(월)~ 4. 06.(월)

- I-Nano Fab의 의견 반영하여 일괄개정에서 삭제(추후 부서 개정 예정)

○ 사전 심사 : 2026. 4. 10.(금)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4. 28.(화)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6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연구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연구처장]

1. 제안사유

인천대학교의 국책사업 및 재정지원사업의 유치 활성화와 연구혁신 전략 수립, 사업의 발굴·기획·조정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연구혁신위원회’ 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제4조)
- 다. 위원회 회의(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6. 3. 16.(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3. 17.(화)
 - 총장방침 : 2026. 3. 23.(월)
 - 의견조회 : 2026. 3. 24.(화) ~ 3. 31.(화)
 - 사전심사 : 2026. 4. 3.(금)

○ 심의결과: 수정가결

□ 제7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국제대외협력처장]

1. 제안사유

- 가. 외국인 학생 기초교양 교과목 수강 대상자의 언어수준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 나. 2026학년도 기초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초교양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어 외국인 학생 기초교양 이수체계에 관한 「인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학생 기초교양 이수체계에 관한 [별표 1] 교과목명 변경 및 언어수준 기준 명시하여 전부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 (교과과정편성)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관련부서 기초교육원과 협의 완료
- 라. 기 타

- 본부회의 보고 : 2026.02.23.
- 교무회의 보고 : 2026.04.07.
- 총장방침 수립 : 2026.04.13.
- 의견수렴 : 2026.04.13.~04.20.
- 사전심사 : 2026.04.21.
- 사전심사 회신 : 2026.04.22.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제8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및 외국어교육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 [제출자: 국제대외협력처장]

1. 제안사유

- 가. 현행상 한국어강사 강사료는 인근 타대학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강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여 왔으며, 이에 우수강사 확보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강사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 나. 그 외 강사 채용심사 및 학사 운영 등에 있어 센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강사 채용 시 실질적 강의능력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표 정비
- 강의수행 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신진강사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구간 점수차 축소(안 제10조 및 별표5)
- 나. 강사료 지급기준 조정 및 지급단가 인상
- 석사학위 경력구간 축소(2개)하여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고, 박사학위 경력구간 하향 조정(안 제12조 별표 6)
 - 강사료 지급 기준 하한액 및 상한액 인상(안 제12조 별표 6)
 - 타기관 강의경력 포함 및 장기간 재직자의 경력 산정기준 합리성 제고(안 제12조 별표 6)
- 다. 연수생 학사관리 기준 및 봉사장학금 지급대상 정비
- 수료 및 제적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사관리 안정성 확보(안 제7조 및 제8조)
 - 봉사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한 연수생 활동참여 유도(안 제 9조 별표4)
- 라. 직제 용어 정비
- “국제교류원” 및 “국제교류원장” 을 “국제대외협력처” 및 “국제대외협력처장” 으로 직제 반영(안 제10조,제15조,제17조, 별표4)

마. 강사료 산정기준 개정 적용시점 명확화

- 강사료 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및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신설(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및 외국어교육센터 교육운영 지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재정전략과 협의 완료

라. 향후계획

- 본부회의 보고 : 2026. 3. 23.(월)
- 교무회의 보고 : 2026. 4. 7.(화)
- 총장방침 수립 : 2026. 4. 13.(월)
- 의견조회 : 2026. 4. 13.(월)~ 4. 20.(월)
- 사전심사 : 2026. 4. 21.(화)~ 4. 22.(수)
- ※ 사전심사 결과 일부 미반영(참고자료 첨부)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6. 4. 28.(화)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6. 4. 30.(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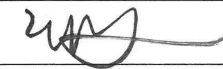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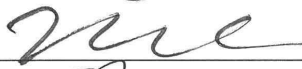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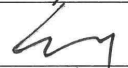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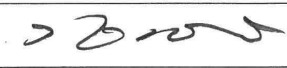

○ 심의결과: 수정가결

2026년도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6-1	인천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6-2	2026학년도 학사운영 계획 변경안	원 안 가 결
	6-3	인천대학교 AI-Biz 연구소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수 정 가 결
	6-4	연구원 규정 제정 및 명칭 정비에 따른 하위 규정 일괄개정규정안 (인천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8건)	원 안 가 결
	6-5	연구원 규정 제정 및 명칭 정비에 따른 하위 지침 일괄개정지침안 (인천대학교 BMI연구소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외 56건)	원 안 가 결
	6-6	인천대학교 연구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지침안	수 정 가 결
	6-7	인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6-8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및 외국어교육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수 정 가 결

2026년 제6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6. 4. 28.(화) 10:0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서명
1	위원장	총장	이인재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최병조	
3	위원	기획부총장	이준한	
4	위원	대학원장	허진	
5	위원	인문대학장	안치영	
6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장균	
7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김태성	
8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성영애	
9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동	
10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김우일	
11	위원	경영대학장	김영균	
12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황문현	
13	위원	사범대학장	김평원	
14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김용철	
15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이승호	
16	위원	교무처장	강희찬	
17	위원	학생·취업처장	이영수	
18	위원	기획처장	김규원	
19	위원	연구처장	황병희	
20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이원우	